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110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성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2. D

변론 종결 2018. 7. 24.

판결 선고 2018. 10. 16.

주 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대 1,041㎡ 중 1/2 지분 및 F 도로 436㎡ 중 6,517.5/43,6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D에게 울산 울주군 E 대 1,041㎡ 중 1/2 지분 및 F 도로 436㎡ 중 6,517.5/43,600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7. 5. 접수 제686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3. 4. 4. 피고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대 649㎡, F 도로 436㎡ 중 43600분의 13035 지분, G 임야 392㎡(이하 위 각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4,08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위 대지 및 임야 중 각 1/2 지분, 위 도로 중 6,517.5/43,600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5. 3. 27. 위 임야는 위 대지에 합병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합병 후의 E 대 1,041㎡ 중 1/2 지분 및 F 도로 436㎡ 중 6,517.5/43,6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 또는 토지의 지분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5. 각 원고와 피고 B의 공유(위 대지 및 임야는 각 1/2 지분씩, 위 도로는 각 6,517.5/43,600 지분씩)로 2013. 5.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각 피고 B 지분(위 대지 및 임야 중 각 1/2 지분, 위 도로 중 6,517.5/43,600 지분)에 관한 부분은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를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다. 판단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 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4.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원고만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있고 피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피고의 부 C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 D에게 위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1,400만 원, 중도금 기일인 2013. 5. 20.에 5,800만 원, 잔금 기일인 2013. 7. 5.에 6,98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1억 4,08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등기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30.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까지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명의수탁자로 보이기 힘든 법률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4. 4. 매매가 그 등기원인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